

['98. 3. 10]
제84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기 획 총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재 천

순서

1. 광주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서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3.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회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 안 사 유

- 각종 위원회 일제 정비계획에 따라 위원의 일부를 교체하고, 위원회 결정사항을 정비코자 함.

2. 주 요 골 자

- 당연직 위원 중 “교통과장, 청소행정과장”을 “회계과장, 도시개발과장”으로 교체(제2조 제3항)
- 위원회 결정사항 중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96. 1. 1 농지개혁법 폐지와 ‘97. 4. 10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 폐지로 “농지개혁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서구 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과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근대화추진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삭제하고,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사무관리규정 제3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평가심의회에서 처리할 사항”, “한가족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7조에서 처리할 사항”을 신설

3. 검 토 의 건

-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한 광주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회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각종 위원회의 정비에 따른 유사기능 통합 및 관련법규 폐지로 위원회 결정사항 정비와 위원들의 기능배분에 따른 일부 위원을 교체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임.
- 제2조 제3항 당연직 위원 위촉에서 일부 위원 교체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실·국간의 위원 편중 및 업무성격과 관련하여 당연직 위원 중 “교통과장, 청소행정과장”을 “회계과장, 도시개발과장”으로 교체하였으며,

- 제3조(결정사항) 중에서 제8호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은 구정조정 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보아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사항으로 그 비중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제9호의 “농지개혁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서구 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은 1996. 1. 1 법률 제4817호 농지법 신설로 농지개혁법이 폐지되고, 농지법 제47조 및 “광주광역시 서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에 의해 농지 관리위원회에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제9호 “유통산업근대화 촉진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근대화추진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은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됨에 따라 그 기능을 상실하여 위 규정을 삭제하였음.
- 조례 제3조 제25호 내지 제27호 신설은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각 부서별로 관계 법규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중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정비와 유사기능은 통합 운영함으로써 위원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코자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사무처리규정 제3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평가심의회에서 처리할 사항”, “한가족생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서 처리할 사항”을 이 조례에 규정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간소화와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 되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봄.

〈참고자료〉

- 제3조의 다음 각호 신설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대상 내용

◎ 제25호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 주관 과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된 민원을 재심의
2. 실무종합심의회가 제기하는 해결이 어려운 1회방문 민원사항
3. 민원 1회방문 처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조치 대안
4. 기타 구청장이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6호 (문서평가 심의회에서 처리할 사항)

1. 보존기간이 5년, 10년인 문서의 폐기여부 등에 관한 사항
2. 보존기간이 20년, 30년인 문서의 폐기여부에 대한 예비심의
3. 비밀문서 보존에 관한 사항
4. 문서 보존기간 변경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보존문서의 평가 등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7호 (한가족생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서 처리할 사항)

1. 제3조제1항 및 제6조에 의해 사용허가 및 수탁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